



제 418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금융회사 임시조치 대상 확대〉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52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4. 7. 8.

다. 회 부 일 : 2024. 7.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시시각각 변화는 범죄의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인출된 이후에 금융회사가 의심거래계좌로 판단하는 등으로 신속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고액의 자금이 범죄조직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처음부터 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여야 함.

이에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여 불법적인 자  
금의 출금을 원천차단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24. 8. 28. 시행예정인 법 제2조의5제1  
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이용자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br>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 2. (생략)<br><u>&lt;신설&gt;</u><br><br>② ~ ④ (생략) |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br>① -----<br>-----<br>-----<br>-----<br>-----<br>-----.<br>1. ~ 2. (현행과 같음)<br>3. <u>이용자 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거래내역이 없는 자가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u><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환급법”이라 함)에 따른 임시조치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결과 이용자 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의미함.(법 제2조의5)<sup>1)</sup>

○ 금융회사가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 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해당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함.

□ 개정안은 기존 거래내역이 없는 자가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금융회사가 판단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편취수법 중 과거 주를 이루었던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큰폭으로 감소였으나, 대면편취 및 상품권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는 증가하였음.

---

1)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표 1]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통계

(단위: 건, 명)

| 구분   | 합 계    |         |        |        | 기관사칭형  |         |       |       | 대출사기형  |         |        |        |
|------|--------|---------|--------|--------|--------|---------|-------|-------|--------|---------|--------|--------|
|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 '19년 | 37,667 | 6,398   | 39,278 | 48,713 | 7,219  | 2,506   | 5,487 | 6,045 | 30,448 | 3,892   | 33,791 | 42,668 |
| '20년 | 31,681 | 7,000   | 34,051 | 39,324 | 7,844  | 2,144   | 4,297 | 4,797 | 23,837 | 4,856   | 29,754 | 34,527 |
| '21년 | 30,982 | 7,744   | 27,647 | 26,397 | 7,017  | 1,741   | 1,954 | 1,895 | 23,965 | 6,003   | 25,693 | 24,502 |
| '22년 | 21,832 | 5,438   | 24,522 | 25,030 | 8,930  | 2,077   | 4,103 | 4,500 | 12,902 | 3,361   | 20,419 | 20,530 |
| '23년 | 18,902 | 4,472   | 20,991 | 22,386 | 11,314 | 2,364   | 7,352 | 8,039 | 7,588  | 2,108   | 13,639 | 14,347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표 2] 편취수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위: 건)

| 구분   | 합계     | 계좌이체   | 대면편취   | 특정장소 지정 | 상품권 등 (소액결제) | 배송형 | 기타    |
|------|--------|--------|--------|---------|--------------|-----|-------|
| '19년 | 37,667 | 30,761 | 3,244  | 480     | 727          | 149 | 2,306 |
| '20년 | 31,681 | 10,822 | 15,111 | 299     | 3,582        | 276 | 1,591 |
| '21년 | 30,982 | 3,483  | 22,752 | 255     | 3,900        | 418 | 174   |
| '22년 | 21,832 | 2,331  | 14,053 | 118     | 4,641        | 431 | 258   |
| '23년 | 18,902 | 4,368  | 7,234  | 227     | 6,615        | 182 | 276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되고 개정되어 온 연혁,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이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sup>2)</sup>에 한하여 지급정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사기이용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좌뿐만 아니라 정상계좌 등 이용자계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도입되었음.

- 제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왔으나, 이와 같은 자체점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지난 제21대국회에서 통신사기환급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임시조치제도의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및 임시조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이 경우 사기범으로 하여금 해당 유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심거래유형 등 자체점검 기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음<sup>3)</sup>.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금융회사가

---

3) 제32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년 12월 18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년 11월 28일) 회의록 참조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되,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체점검 및 임시조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도입·개정되었다는 측  
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상적인 상거래 및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과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재산권 제한에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범죄자가  
이를 회피함으로써 실효성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 기존 거래내역이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이체된 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의 경우 일평  
균 6,000~8,000건 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  
본인확인조치<sup>4)</sup>를 거쳐 이를 해제<sup>5)</sup>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상황이 지연되어 선의의 이용자의 불편이 일정부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금융회사  
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  
5)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화통화, 대면확인 방식의 본인확인 인증을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도  
록 운영하고 있음.

- 임시조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sup>6)</sup>, 개정안과 같이 기존 거래내역이 없는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송금된 계좌에 대해 필요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등의 과정에서 임시조치를 피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먼저 송금한 후 나머지 자금을 송금하는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6) 헌법재판소는 통신사기환급법 제4조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제도가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법정의견은 지급정지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함.)